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70
----------	-------

발의연월일 : 2025. 6. 16.

발 의 자 : 김원이 · 조계원 · 주철현
한준호 · 곽상언 · 허성무
김교홍 · 신영대 · 이수진
김동아 · 김승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총 561만 5천명으로 이중 여성 자영업자 수는 173만 4천명(2025년 4월 기준) 내외임. 여성 자영업자의 76.5%에 달하는 132만 7천명은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에 해당함.

여성 1인 자영업자는 특정한 장소에서 항상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안전상 우려가 있음.

실제로 왁싱숍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가해자가 여성 사업주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

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여성 1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1인 소상공인(여성 또는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성 1인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여성 1인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여성 1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1인 소상공인(여성 또는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u> <u>1. 여성 1인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u> <u>2. 여성 1인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u>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
로 정한다.